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회규정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회장

목 차

제1장 총칙

1.1. 통칙

1.2. 경연

1.3. 참가자

1.4. 재판부

제2장 경연 준비

2.1. 참가신청

2.2. 예선

2.3. 대진표의 확정

2.4. 서면의 형식

제3장 법정 경연

3.1. 통칙

3.2. 본선

3.3. 결선

제4장 평가

4.1. 순위 결정 등

4.2. 벌점

제5장 시상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1.1. 통칙

1.1.1. 목적

본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실무 교육과 우수 법조인 양성에 일조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의 법률이론·변론실무 및 법적 논증 등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대법원 주최 변론 경연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대회 명칭

본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명칭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로 한다.

1.1.3. 대회의 주최·주관

- 1)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며 대회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2) 대회장은 대회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집행위원회는 대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주무위원 1인 포함) 및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 4)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1.1.4. 대회의 구성

대회는 서면심사, 본선 및 결선으로 구성된다.

1.1.5. 대회 개최 횟수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1.1.6. 대회 규정의 적용 및 해석

- 1) 대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대회장이 결정한다.
- 2) 대회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대회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1.2. 경연

1.2.1. 경연 분야

경연은 민사, 형사 등 재판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2.2. 경연 방식

경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예선: 경연 팀은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본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
2. 본선
 - 1) 경연 팀은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하고,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각 서면(검찰 측의 의견서,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을 모두 제출한다.
 - 2) 집행위원회는 대진표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를 부여하고(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그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
 - 3) 경연 팀은 부여된 지위에 따라 화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 4) 경연 팀은 제출된 서면과 화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본선 변론을 실시하고,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결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

3. 결선

- 1) 결선문제는 본선문제와 동일하다. 다만 결선 경연 전(1시간 이내)에 본선에 출제된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하는 등 심화된 내용을 부가할 수 있다.
- 2) 경연 팀은 변론 준비를 거친 후(1시간 이내) 화상자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토론 형식으로 구두변론을 실시하며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한다.

1.2.3. 경연 문제

- 1) 문제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논증 능력 함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출제되며, 재판기록의 형태를 띠는 '기록형' 또는 사건 개요 설명의 형태를 띠는 '사례형'으로 제시된다.

- 2) 문제는 예선에서 민사·형사 각 1문제, 본선 및 결선에서 민사·형사 각 1문제를 출제하되, 결선에서는 본선에 출제된 민사·형사 각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
- 3) 문제는 예선 및 본선의 경우 경연 팀 양측에 동일하게 제시된다.

1.3. 참가자

1.3.1. 참가자격 및 팀(team)의 구성

- 1) 대회에는 동일한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횟수는 제한이 없다.
- 2) 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 3) 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발견되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

1.3.2. 참가자의 공정성

1.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연에서 요구되는 법적·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연구하고, 변론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학 로스쿨의 교수 등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 자료조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 2) 서면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 3) 구술변론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2.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경연 심사를 위한 재판부에 재학 로스쿨, 인적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경연에 참가하여야 한다.

1.4. 재판부

1.4.1. 재판부의 구성

- 1) 재판부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한다.
- 2) 심사관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4.2. 재판부의 독립성

재판부는 본 대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평가한다.

1.4.3. 재판부의 공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경연의 참가자와 사이에 배우자·친족의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심사관이 될 수 없다.

제2장 경연 준비

2.1. 참가신청

2.1.1. 개최 공고

대회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회 개최를 공고한다.

2.1.2. 신청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팀을 대표하고 대외 연락업무를 담당할 팀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참가 분야의 조정

- 1)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신청 시 경연 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 2) 집행위원회는 각 경연 분야의 참가신청 팀 수가 정상적인 대회 운영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불균형할 경우 신청순, 로스쿨 편중 등을 고려하여 참가신청 팀의 경연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 3) 위 2)에 따라 신청 팀의 경연 분야를 조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신청기한 만료 직후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2.1.4. 참가 팀에 대한 참가번호 부여

참가신청을 한 팀에게는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2.2. 예선

2.2.1. 필요적 서면심사

참가 팀은 참가신청절차 종료 후 신청한 팀의 수와 관계없이 경연 분야별로 서면심사 절차를 거친다.

2.2.2. 서면의 제출

참가 팀은 집행위원회로부터 예선 문제를 전자문서로 송부 받으면 그에 대한 준비서면 또는 변론요지서 등 수행 과제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2.3. 본선 진출 팀의 선정 및 공고

- 1) 예선 결과 경연 분야별 각 상위 16개 팀을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한다. 단 집행위원회는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경연 팀이 일부 로스쿨에 현저히 편중된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2) 집행위원회는 본선 진출 팀이 확정되면 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함과 아울러 본선 진출 팀에게 전자문서로 개별 통지한다.

2.3. 대진표의 확정

2.3.1. 대진 팀 결정 절차

- 1) 집행위원회는 본선 경연 팀 공고 직후 자체 없이 대진 팀 결정 절차를 실시한다.
- 2) 대진 팀 결정은 추첨에 의한다.
- 3) 추첨에 참가하지 않는 팀은 대회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3.2. 대진표의 확정 방법

- 1) 본선 대진표는 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진표의 번호를 추첨함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추첨은 팀장이 하되, 팀원 또는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추첨함 대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결선 대진표는 본선 경연 후 결선 경연 전에 집행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3) 로스쿨이 동일한 참가 팀이라도 서로 경연할 수 있다.

2.3.3. 본선 진출 팀의 추가 선정

- 1) 본선 진출 팀의 출전자격이 상실되는 등 본선 진출 팀 추가 선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심사 결과에 따른 차점 팀 순으로 본선 진출 팀을 추가 선정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 사유 발생 시점에 본선 진출 팀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다른 본선 진출 팀들의 본선 경연 준비 및 집행위원회의 본선 경연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선 진출 팀 추가 선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추가 선정된 팀의 대진은 집행위원회의 추첨으로 확정되고, 추가 선정된 팀에게는 그 취지가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정된 팀이 직접 추첨하게 할 수 있다.

2.3.4. 대진표의 공고

집행위원회는 확정된 대진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4. 서면의 형식

2.4.1. 서면의 존재 형태

- 1) 제출 서면은 '한글(HWP)' 파일로만 작성되어야 한다.
- 2) 파일명은 "대회 연도(개최공고일 기준)-참가번호-경연 분야-경연 단계-지위" 순으로 붙인다(예 : 2024-123456-민-본-원, ⇐ 2024년 대회 본선에 진출한 123456번 팀이 민사재판 원고로서 제출한 서면, 형사재판은 '형', 피고는 '피', 검사는 '검', 변호인은 '변'으로 각각 표시).

2.4.2. 서면의 양식

- 1) 서면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문서 크기 : A4
 - 사방 여백 : 위쪽 · 아래쪽 15mm, 오른쪽 · 왼쪽 20mm
 - 머리말 · 꼬리말 : 20mm
 - 우측 상단 머리말에 파일명 명기
 - 우측 하단 꼬리말에 참가번호 명기
 - 하단 중앙에 쪽 번호 명기

○ 글자모양

제목 : 글씨체 휴면 고딕, 글씨 크기 13, 자간 0, 장평 100, 문단 위·아래 3, 굵게

본문 : 글씨체 휴면 명조, 글씨 크기 12, 자간 0, 장평 100, 문단 위·아래 3

○ 줄간격 : 200

○ 분량 : 출제 문제 등에 서면의 분량 관련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 각주 : 사용 불가

2) 법령, 판례 및 문헌 표기는 괄호로 처리한다.

3) 서면에는 별도의 장으로 된 표지, 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2.4.3. 서면의 익명성

1) 서면 작성 명의는 참가 번호로만 기재한다.

2)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는 참가 팀의 로스쿨,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4.4. 서면의 제출 기한

출제 문제 등에 제출 의무가 설정된 서면의 제출 기한 관련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법정 경연

3.1. 통칙

3.1.1. 경연 장소

변론기일의 경연은 대회장이 지정하는 법정에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 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

3.1.2. 경연 시간

변론기일의 경연은 본선은 45분간, 결선은 60분간 각 진행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3. 경연 방법

- 1) 변론은 쟁점 정리 \Rightarrow 주 변론 \Rightarrow 재 변론 \Rightarrow 종합 변론 순으로 진행한다.
- 2) 각각의 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주 변론은 3분 이상 하여야 하며, 본선의 경우에는 2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하고 결선의 경우에는 추가 쟁점을 포함하여 3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한다. 이 때 1명의 변론자가 자신의 변론을 마치면 그 변론자는 당해 변론(주변론)에서 재차 변론 할 수 없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재차 변론할 수 있다.
- 4) 재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추가 재 변론을 할 수 있다.
- 5) 본선에서는 주 변론을 한 사람은 종합 변론에서 변론할 수 없다.
- 6) 양 팀은 변론 중 수시로 재판부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고, 한 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각 팀에 주어진 위 변론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 재판부는 변론자가 주어진 변론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알리고 1분 이내에 종료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 8) 변론자가 위 7)에 따른 촉구를 받았음에도 1분을 초과한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중단 시킬 수 있다.
- 9) 참가 팀은 변론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 10) 참가 팀은 변론 시 법정에 설치된 실물화상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3.1.4. 일방적 절차 진행

- 1) 한 팀이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10분을 기다린 후 출석 한 팀에게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을 허가한다.
- 2) 경연 진출 팀의 출전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에 따라 대체 경연 진출 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1)과 동일하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는 개정 직후 출석한 팀에게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3) 위 1), 2)항의 경우, 재판부는 출석한 팀을 평가함에 있어 출석하지 않은 팀이 출석 하여 변론한 것으로 가정하되, 상대 팀이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한다.

3.1.5. 경연장소에서의 의사소통

- 1) 경연 팀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은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재판부 및 경연 팀과 방청인 사이에서는 구두, 서면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3.1.6. 경연의 공개

경연은 공개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공개 대상·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3.1.7. 경연장소에서의 질서 유지 등

- 1) 경연장소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
- 2) 경연장소에서의 촬영, 녹화·녹음, 방송 등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때 촬영, 녹화·녹음·방송 행위로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앞서 진행되는 경연을 방청하거나 위 2)의 촬영, 녹화·녹음, 중계 결과물을 보거나 들어서는 아니 된다.
- 4) 경연 팀은 경연장소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재학 로스쿨,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름표, 옷, 책자, 파일, 언행 등의 징표를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경연장소에 있는 방청인에게도 적용된다.
- 5) 참가자, 방청인은 경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재판장은 위 4), 5)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8. 경연의 공정성 확보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팀에게 앞서 진행되는 경연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참가 팀의 동시 집합
2.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팀에 대한 일정 장소에서의 대기 및 외부와의 연락 제한
3.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의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보관

3.1.9. 원격영상재판

- 1) 본선 및 결선 경연은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2)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연을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본선 문제 게시와 함께 원격영상재판의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공고

한다.

3.2. 본선

3.2.1. 본선의 진행

- 1) 경연 분야별 본선 진출 각 16개 팀을 4개 조로 편성한다.
- 2) 1개 조별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1개의 재판부가 2개 이상의 조를 담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3.2.2. 문제 출제 및 서면 제출

- 1) 집행위원회는 본선 진출 팀 확정 공고 이후 본선문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2) 본선 경연 팀은 문제가 공지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각 준비서면)을 모두,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각 서면(검찰 측의 의견서,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을 모두 집행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3) 집행위원회는 대진표 추첨 결과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를 부여하고(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경연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 경연 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여된 지위에 해당하는 화상자료(ppt)를 제출한다.
- 4) 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경연 팀에게 제출된 상대방 측의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2.3. 기일의 지정

변론기일의 경연은 각 경연 팀의 서면 교환이 종료된 후 진행한다.

3.2.4. 결선 진출 팀 확정

경연 분야별 각 조 1위 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다만, 조 1위 팀의 대회 참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조의 차순위 팀순으로 결선 진출 팀을 선정하되, 결선 경연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선 진출 팀 추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3. 결선

3.3.1. 결선의 진행

- 1) 경연 분야별 결선 진출 팀을 2개 조로 편성한다.
- 2) 경연 분야별로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한다.

3.3.2. 문제 출제 및 변론 준비

- 1) 결선 문제는 본선 문제와 동일하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결선 진출 팀이 확정되면 각 결선의 경연 전(1시간 이내) 본선 문제에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
- 2) 결선 경연 팀은 결선 경연 전(1시간 이내) 진출 팀 대기실에서 변론 준비를 한다.

3.3.3. 순위 확정

우승팀, 준우승팀을 비롯한 1 ~ 4위의 순위는 경연 분야별로 결정한다.

제4장 평가

4.1. 순위 결정 등

4.1.1. 평가 항목

경연은 아래 각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문제의 이해도 : 쟁점 파악 능력, 논리력 등
2. 서면 작성의 적정성 : 구성, 법률소양, 설득력, 명료성, 문장스타일 등
3. 변론의 적정성 : 화술, 동작, 전달력, 팀워크, 독창성 등
4. 법정 태도의 적정성 : 예절, 법정 자세 등
5.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 이해력, 정확도, 순발력 등
6. 일반 교양 : 용어의 선택, 문화 및 역사 소양 등
7. 대회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4.1.2. 평가 방법

- 1) 위 4.1.1.의 제1 내지 6은 득점 방식으로, 제7은 감점 방식으로 각 평가한다.
- 2)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은 본선은 [별지 1-1], 결선은 [별지 1-2]와 같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1.3. 팀 순위 결정

- 1) 경연 팀 순위 결정은 재판부 3인이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 부여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 2)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본선 경연은 변론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서면 작성의 적정성, 문제의 이해도, 법정 태도의 적정성, 일반 교양 순 고득점 팀을 우위로 하고, 결선 경연은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변론의 적정성, 서면 작성의 적정성, 문제의 이해도, 법정 태도의 적정성, 일반 교양 순 고득점 팀을 우위로 한다.

4.1.4. 최우수 경연자의 결정

경연 분야별 결선 재판부는 합의에 의하여 결선을 치른 경연자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1인을 경연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4.1.5. 평가의 비공개

경연 팀들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 및 이를 위한 합의는 비밀로 한다. 누구든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벌점

4.2.1. 벌점의 부과

- 1) 본선 및 결선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은 [별지 2-1]에 따르고, 재판장이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부과한다.
- 2) 서면에 대한 벌점 내역은 [별지 2-2]에 따르고, 그 이외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은 [별지 2-3]에 따르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부과한다.

4.2.2. 벌점 처리 방법

벌점은 심사관별 각각 부여한 점수의 합계에서 감점한다. 다만 서면 작성 항목으로 발생한 벌점([별지 2-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에 한해서는 서면 작성의 적정 항목으로 부여된 점수에서만 감점한다.

4.2.3. 자격 상실 효과

경연 참가 팀이 4.2.1.의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에 규정된 위반 행위로 대회 출전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팀의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은 바로 다음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제5장 시상

5.1. 본선 및 결선 입장

- 1) 결선 경연 분야별 각 1~4위 팀을 시상한다.
- 2) 경연 분야별로 결선에서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각 1명을 시상한다.
- 3) 본선 각 조별 2~4위 팀을 시상한다.
- 4)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로스쿨을 시상한다.
 - ① 민사와 형사의 참가자를 모두 합하여 각 로스쿨의 총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참가한 로스쿨 1개 교를 시상한다. 만일 그 비율이 같을 경우 총 정원 대비 본선에 진출한 학생 수의 비율, 그 비율이 같을 경우 결선에 진출한 학생 수의 비율, 그 비율이 같을 경우 로스쿨의 총 정원(정원이 적은 로스쿨을 선순위로 봄), 총 정원이 같을 경우 결선 순위(각 로스쿨의 선순위 - 차순위 순으로 비교)의 순서로 해당 로스쿨을 정한다.
 - ② 각 로스쿨별로 민사와 형사의 참가팀을 모두 합하여 아래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 후 합산한 총 점수가 높은 로스쿨 2개 교를 시상한다. 만일 그 총 점수가 같을 경우 결선에 진출한 팀의 수, 그 수가 같을 경우 로스쿨의 총 정원(정원이 적은 로스쿨을 선순위로 봄), 총 정원이 같을 경우 결선 순위(각 로스쿨의 선순위 - 차순위 순으로 비교)의 순서로 해당 로스쿨을 정한다.

<기준>

본선 각 조별 3, 4위팀(16개): 1점 / 본선 각 조별 2위팀(8개): 2점

결선 4위팀(2개): 3점 / 결선 3위팀(2개): 4점 / 결선 2위팀(2개): 5점

결선 1위팀(2개): 6점

- ③ 위 ①, ②항의 기준에 의한 수상학교가 중복되는 경우 그 수상학교는 ②항 기준

에 의하여 수상하고, ①항 기준에 의한 수상학교는 위 ①항의 기준에 따른 차순 위 학교가 수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보칙

6.1. 대회를 위한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 용도의 제한

대회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대법원에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2. 우수 경연 및 서면의 공개 · 귀속

집행위원회는 대회에서 행하여진 경연 내용과 제출 서면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참가자는 위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3. 집행위원회에 대한 협력 의무

대회 참가 팀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6.4. 집행위원회와 참가 팀의 의사소통

대회 진행을 위한 집행위원회와 참가 팀 사이의 공고, 통지, 문제 송부, 서면 제출 등의 의사소통은 본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 팀이 부담한다.

[별지 1-1] 평가 요소 배점 비율(본선)

구분	비율 (100%)	탁월 (81-100점)	우수 (61-80점)	보통 (41-60점)	부족 (21-40점)	미흡 (0-20점)	환산점수
① 문제의 이해도	10%						
② 서면 작성의 적정	30%						
③ 변론의 적정	30%						
④ 법정태도의 적정	5%						
⑤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20%						
⑥ 일반 교양	5%						
⑦ 절차 준수의 적정	감점제						

[별지 1-2] 평가 요소 배점 비율(결선)

구분	비율 (100%)	탁월 (81-100점)	우수 (61-80점)	보통 (41-60점)	부족 (21-40점)	미흡 (0-20점)	환산점수
① 문제의 이해도	10%						
② 서면 작성의 적정	10%						
③ 변론의 적정	30%						
④ 법정태도의 적정	5%						
⑤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40%						
⑥ 일반 교양	5%						
⑦ 절차 준수의 적정	감점제						

[별지 2-1] 경연 과정에서의 별점 내역

순번	규정	위반내용	벌점
1	3.1.3.	변론시간 초과 : 1분 이내	경고
2	3.1.3.	변론시간 초과 : 1분 이후	2
3	3.1.3.	변론순서 · 방법 위반	5
4	3.1.5.	부적절한 의사소통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5	3.1.7.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6	3.1.7.	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7	3.2.2.	서면 미제출	30점
8	3.1.4.	지각 또는 불참	2분 당 1점(10분 초과 탈락, 다음 대회 참가 불허)
9	1.3.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기타 공정성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등 재판부가 벌점을 부과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별지 2-2] 서면에 대한 별점 내역

순번	규정	위반내용	벌점
1	2.4.1. 2.4.2.	서면 형식 위반	1개 당 0.5점 같은 항목으로 최고 3점
2	2.4.2.	분량 초과	A4 10장 또는 10,800자(띄어쓰기 포함) 초과 시 1장 이내 또는 1,08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 당 3점
3	2.4.3.	익명성 조건 위반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4	2.4.4.	제출 지연	당일 18:00까지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당일 18:00부터 익일 18:00까지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추가 가산 익일 18:00 경과시 미제출 처리
5	1.3.2.	외부의 부당 지원에 의한 작성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별지 2-3] 기타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

순번	규정	위반내용	벌점
1	1.3.2.	의명성 조건 위반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2	1.3.2. 3.1.5.	외부의 부당 지원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3	1.3.2., 3.1.7.	불공정한 정보제공 행위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4	3.1.8.	집합시간 위반	경연 개시 이후 10점, 그 이후 10분 초과시 5점
5	3.1.8. 6.3.	규정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고의적인 불응	1건 당 3점 15점부터 자격상실
6	1.3.2.	공정성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등 집행위원회가 벌점을 부과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